케냐 ABS 규정

2006년 12월 1일

(입법 보충서 제47호)

법적 고지 제160호

환경 관리 및 조정 법
(1999년 제8호)

환경 관리 및 조정 법
(생물다양성 및 자원의 보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규정, 2006년

규정의 구성

제1부 – 서론

1-인용.
2-해석.
3-적용.

제2부 – 생물다양성의 보전

4-환경영향평가 라이선스.
5-멸종우려종 보전.
6-생물다양성 목록.
7-현황 감시.
8-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 보호.

제3부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9-접근허가.
10-신청 접수 통지.
11-신청 결과.
12-접근허가서.
13-결정 전달.
14-접근허가 유효성 및 갱신.
15-접근허가의 조건 등.
16-접근허가의 중단, 취소 등.
17-접근허가 등록부.
18-물질이전협정.

제4부 – 이익 공유

19-부의 적용.
20-이익 공유.

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제5부 – 기타

21-비밀유지.
22-전환.
23-위법.
24-처벌.

부속서 1 – 접근허가신청서
부속서 2 – 비용
부속서 3 – 접근허가서

환경 관리 및 조정 법
(1999년 제8호)

환경 관리 및 조정 법(1999) 제147절에 따라 부여된 권한의 가진 환경천연자원부 장관은 당국의 권고에 따라 그리고 주관기관과의 협의 후 하기와 같은 규정을 수립한다.

환경 관리 및 조정(생물다양성 및 자원의 보전,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규정, 2006년

제1부 – 서론

국립생물자원관
ABS 국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1. 인용.
본 규정은 “환경 관리 및 조정(생물다양성 및 자원의 보전,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익 공유) 규정, 2006년”으로 인용될 수 있다.

본 규정에서 맥락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접근”은 보전된 유전자원(관련 파생물은 물론 적절한 경우 관련 무형요소도 포함)을 연구, 생물자원탐사, 보전, 산업적 적용 또는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획득, 보유,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접근허가”는 규정4 하에서 발부된 허가로, 사람이 유전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허가를 의미한다.

“이익공유”는 유전자원을 이용함으로써 축적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멸종위기종”은 종의 서식지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걸쳐, (인간 또는 환경의 자연적 변화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의미한다.

“유전물질”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외 기원의 물질을 의미한다.

“서식지”는 생물체 또는 개체군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장소 또는 지역의 유형을 의미하며 유입생물체가 군락을 이룬 지역도 서식지에 포함된다.

“정기준표본”은 신규 종을 지정하기 위해 선택된 단일 표본을 의미한다.

“무형요소”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케냐 관할권 내 유전자원과 연계된 또는 유전자원에 관한 정보이다.

“목록”은 자원의 구체적인 목록·보고서·기록 또는 동 목록·보고서·기록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

“물질이전협정”은 접근허가보유자와 주관기관 또는 공동체 간 협상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협정이다.

“자연환경계”는 영구 습지 및 계절적 습지 등 상대적으로 온전하면서도 독특한 가치를 지닌 생태계, 매우 다양한 수생생태계, 희귀종 및 특이종의 고밀집도를 촉진하는 생태계를 의미한다.

“사전통보승인”은 주무관청의 통지 또는 정보를 교환, 수령, 취급하기 위한 국제적 운영 절차를 의미한다.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멸종우려종”은 예측가능한 미래에 종의 서식지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걸쳐 멸종위기종이 될 확률이 높은 식물 또는 동물의 종을 의미한다.

3. 적용.
본 규정은 하기 기재된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케냐 현지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그들의 소비 목적으로 이행된, 구성원들 간의 유전자원, 그 파생물 또는 유전자원 및 그 파생물과 관련된 무형요소의 교환

제326장
(나) 종자 및 식물품종 법에 따른, 식물육종가로부터 파생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다) 인간유전자원

(라) 관련 지식재산권법에 준거하여, 케냐의 권위있는 학술기관 및 연구기관 내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승인된 연구 활동

제2부 – 생물다양성의 보전

4. 환경영향평가 라이선스.
(1) 개인 또는 법인은 하기 기재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나) 외래종의 유입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다)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

단, 관련법에 따라 당국이 발부한 환경영향평가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본 규정에서 “외래종(exotic species)”은 케냐의 일부 또는 전 지역에 자연적 서식지가 존재하지 않거나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동식물 또는 미생물(생활형) 종으로서 다른 생물체를 능가하는 종이다.

5. 멸종우려종의 보전.
(1) 당국은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멸종우려종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금지 및 제한 사항 또는 이와 유사한 대책을 수립하여 이들 종의 재생을 유도하고 최대지속가능생산량을 확보하고자 한다.

(2) 당국은 상기 규정의 보편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하기 내용을 이행한다.

(가) 멸종우려종의 복구 및 복원을 위한 시설의 수립 및 유지관리에 대한 라이선스 발부

(나) 멸종우려종 및 자연서식지의 복원을 위한 멸종우려종의 완전한 복구 및 복원 대책 결의

6. 생물다양성 목록.
(1) 본 규정의 시행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당국은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케냐의 생물다양성 목록을 식별하고 작성한다.

(2) 목록에는 멸종우려종, 멸종위기종, 희귀종을 포함한다.

(3) 당국은 목록을 유지하고 매년 갱신한다.

(4) 목록은 당국의 공적 기록으로서, 당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당국에 신청하여 관련 비용을 지불한 자에게 규정된 방식에 따라 공개된다.

7. 현황 감시.
당국은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케냐의 생물다양성의 현황과 요소를 감시하고 생물다양성의 고갈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8.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 보호.
본 규정의 제2부는 관련법 제54절에 따라 생물다양성을 촉진하고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보 공지에 보호 자연환경계로 공표된 토지, 해양, 호수, 또는 강에 적용된다.

제3부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9. 접근허가.
(1) 케냐의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본 규정 부속서 1에 명시된 양식으로 당국에 접근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해당 신청 시 본 규정 부속서 2에 규정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 신청 시 관련인 및 주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사전통보승인의 증거와 함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발급한 연구허가증명서를 제시한다.

10. 신청 접수 통지.
당국은 신청 접수 후 관보 및 전국에 배포되는 1종 이상의 신문에 공고함으로써 또는 당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그 외 방법으로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통지한다. 이 때에는 하기 사항이 명시된다.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가) 신청자 성명 및 그 외 정보
(나) 접근허가 대상 활동
(다) 제안된 접근허가와 관련하여 당국에 진정 또는 이의제기가 가능한 기간

11. 신청 결과.
(1) 당국은 제안된 접근허가에 대한 진정이나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을 검토한 후 대상 활동이 케냐인을 위한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을 촉진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접근허가를 발부한다.

(2) 당국이 접근허가를 거절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당국은 거절의 근거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당국의 허가 거절을 불합리한 것으로 고려한 자는 관련법 129절에 따라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12. 접근허가서.
부속서 3에 수록된 양식을 접근허가서로 규정한다.

13. 결정 전달.
당국은 접근허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결과를 확정하여 관련 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14. 접근허가 유효성 및 갱신.
(1) 접근허가는 허가 발부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만기 시 부속서 2에 규정된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당국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한 조건에 따라 접근허가를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15. 접근허가의 조건 등.
(1) 접근허가에는 당국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한 조건이 포함된다.

(2) 모든 접근허가에는 당국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한 조건 외에도 하기 조건이 묵시적으로 포함된다.

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가) 수집한 유전자원 일체의 사본과 정기준표본을 주관기관에 맡긴다.

(나) 수집한 식물유전물질 무형요소 일체에 대한 기록을 당국에 맡긴다.

(다) 수집한 모든 유전자원은 그러한 유전자원 및 무형요소가 보유된 곳이 국내이든 해외이든 관계 없이, 이에 대한 합당한 접근이 케냐 시민들에게 보장된다.

(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은 절대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목적에 대해서만 이행되어야 한다.

(마) 유전자원 및/또는 관련 무형요소에 관한 연구에서 발견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연구 현황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한다.

(바) 접근허가보유자는 당국에 접근허가에 따라 허여된 접근 권한을 행사하는 중에 발견한 모든 사항을 알린다.

(사) 접근허가보유자는 하기와 같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i) 진행중인 유전자원 또는 관련 무형요소 수집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반기별 현황 보고서

(ii) 유전자원 또는 관련 무형요소 수집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종 현황 보고서(해당 수집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아) 접근허가보유자는 국가법을 준수해야 한다.

(3) 당국은 자의적으로 또는 접근허가보유자의 신청에 따라 접근허가의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16. 접근허가의 중단, 취소 등.
(1) 접근허가보유자가 해당 접근허가에 관한 조건이나 본 규정에 묵시적으로 명시된 조건 또는 접근허가 부여에 따라 체결된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당국은 본 규정 하에서 발부된 접근허가를 중단,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2) 당국은 접근허가의 중단, 취소 또는 철회 전에 허가를 중단, 취소 또는 철회 의도를 접근허가보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에 따라 접근허가보유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국의 중단, 취소 또는 철회 의도에 대해 항의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3) 당국이 허가를 중단,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당국은 관보 및 전국에 배포되는 1종 이상의 신문에 허가 중단, 취소 또는 철회 명령을 공표한다.

(4) 접근허가의 중단, 취소, 철회 규정 11(3)의 내용을 준용한다.

17. 접근허가 등록부.
당국은 당국이 부여한 모든 접근허가를 기록한 등록부를 보관, 관리, 갱신해야 한다. 등록부는 당국의 공적 기록이며, 당국에 신청한 후 부속서 2에 규정된 비용을 지불한 자는 규정된 방식으로 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다.

18. 물질이전협정.
본 규정에 포함된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물질이전협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케냐 외부로 어떠한 유전물질도 이전할 수 없다.

제4부 – 이익공유

19. 제4부의 적용.
본 부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시행 중인 법에 따라 적용된다.

20. 이익 공유.
(1) 상기 내용의 보편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접근허가보유자는 허가된 활동의 이행에 있어서 케냐 시민 및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진한다.

(2) 상기와 같은 접근허가보유자의 촉진에는 부여된 접근 권한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의 향유가 포함된다.

(3) 금전적 이익은 다음과 같다.

(가) 수집 또는 획득한 표본 당 접근료
(나) 선급금
(다) 이행단계에 따른 중도금
(라) 로열티
(마) 상업화의 경우에는 실시료
(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원하는 신탁기금에 지급하는 부담액
(사) 급여 및 특혜 조건(상호 합의된 경우)
(아) 연구 지원금
(자) 합작투자
(차) 관련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4) 비금전적 이익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 개발 결과의 공유

(나) 가능한 경우, 제공국 내에서 과학적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 특히 생명공학 연구 활동에 관한 협업, 협력, 기여

(다) 제품 개발 참여

(라) 유전자원 현지 외 시설 출입 및 데이터베이스 접근

(마) 합의된 양보 조건 및 특혜 조건 등 공정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케냐로 지식 및 기술 이전. 생명공학 등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지식 및 기술 또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지식 및 기술의 이전

(사) 케냐로의 기술 이전을 위한 역량 강화

(아) 제도적 역량 강화

(자) 접근 규정의 운용 및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

(차) 케냐가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그리고 가능한 경우 케냐 내에서 시행되는 유전자원 관련 교육훈련

(카) 생물학적 목록과 분류학적 연구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과학적 정보에의 접근

(타) 접근 및 이익공유 협정과 후속 협력 활동으로부터 형성될 수 있는 제도적, 전문적 관계

(파) 관련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제5부 - 기타

21. 비밀유지.
(1) 접근허가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당국은 신청 대상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일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수 있다.

(2) 접근허가가 부여된 경우, 상기 (1)항에 따라 그리고 해당 신청자와 관련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는 규정 17에 따라 접근허가 등록부를 검사하는 자에게도 공개되지 않는다.

22. 전환.
본 규정이 발효되기 직전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활동을 이행한 자는 본 규정이 발효된 후 6개월 이내에 본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3. 위법.
본 규정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못한 것은 위법으로 간주된다.

24. 처벌.
본 규정에 따른 위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18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35만 실링 이하의 벌금형 또는 두 가지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다.

(r. 9)

접근허가신청서

개인 신청자는 1부를 기입하십시오.

기업(기관) 신청자는 2부를 기입하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3부를 반드시 기입하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본 신청서의 하드카피 10부와 소프트카피 1부를 당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부
개인 신청자
(가) 성명
(나) 신분증번호/여권번호
(다) 우편주소
(라) 개인식별번호(PIN)
(마) 고정주소
(바) 자격(이력서 첨부)

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2부
기업(기관) 신청자
(가) 기업/기관명
(나) 고정주소
(다) 등록주소
(라) 등록번호(등록증 사본 첨부)
(마) 프로젝트 참여 개인 자격(이력서 첨부)
(바) 다음과 관련된 세부사항(존재하는 경우)
(i) 지주회사 및 자회사
(ii) 프로젝트 참여 개인
(사) 본 신청과 관련된 연락담당자 성명 및 직위

3부
개인/기업 신청자(공통)

1.0 재정
재정

(i) 총 사업비
(ii) 해당 사업에 대한 기업 또는 개인 후원자 세부사항

2.0 기술 사항
(가) 동아프리카 국가(케냐, 우간다 및/또는 탄자니아)에서 수행된 수집/연구 실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나) 접근 대상 유전자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i) 분류학적 학명
(ii) 접근이 이행될 특정 지역들
(iii) 가능한 위치
(iv) 수집될 유전자원의 부분(조직, 세포, 종자, 잎, 미생물 등)
(v) 파생물 및/또는 산물
(vi) 수집될 수량
(vii) 유전자원의 알려진 용도
(viii) 현지 외 보유된 유전자원의 경우, 관련 보관 기관(들) 세부사항

(다) 계획된 수집 임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i) 접근 대상 유전자원 제공자(들)의 신원

(ii) 사용될 수집 방법

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iii) 투입될 케냐 국민 또는 기관이 있는 경우, 관련 세부사항

(iv) 활동 개시 및 완료 예정일

(v) 케냐를 방문할 외국인의 케냐 내 비자 상태 정보

(라) 유전자원의 제안된 이용

(i) 유전자원 이용 방식
(ii) 예상되는 연구 결과
(iii) 연구 프로그램의 각 요소가 이행될 지리학적 위치

(마)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신청자가 제공하는 로열티, 비용 및/또는 그 외 보상 세부사항

(바) 본 신청서에 기술된 유전자원을 식별하고 이에 접근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필요한 도움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사) 유전자원의 주관기관, 지역 공동체, 또는 개별소유자의 서명이 있는 사전 통보승인 문서 사본

(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허가서 사본

(i) 국가환경관리국(National Environment Management Authority(NEMA))이 접근허가를 부여함에 있어서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청자 소유 기타 정보

3.0 갱신 세부사항
본 신청은 접근허가 갱신을 위한 신청입니까?

네……. 아니오……..
접근허가 번호…….발부일자……..(날짜)

국가환경관리국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환경 관리 및 조정(생물다양성 및 유전자원의 보전,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정, 2006년”에 따라 처벌 가능한 위법행위임이 모든 신청자에게 사전 고지됩니다.

본인은 본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이행현황 보고서와 상세 보고서를 제출할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본 신청과 관련되어 제공된 정보는 사실임을 선언합니다.

개인 신청자

신청자 성명
서명
날짜

기업/기관 신청자
(회사직인 날인)

참석

대표이사 성명

서명

총무 성명
서명
날짜

부속서 2
(r. 9, 14(2), 17)

비용

케냐 실링(KSh.)

(가) 접근허가 신청
(i) 개인 신청자 20,000.00
(ii) 기업 신청자 50,000.00

(나) 접근허가 갱신
(i) 개인 신청자 10,000.00
(ii) 기업 신청자 25,000.00

(다) 접근허가 등록부 열람
(1) 내국인 1,000.00
(2) 외국인 5,000.00

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부속서 3
(r. 12)

접근허가서

본 허가서는 “환경 관리 및 조정(생물다양성 및 유전자원의 보전,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정, 2006년”의 규정 11에 따라 ……(유전자원의 위치에 대한 지리학적 설명)에 위치한 다음과 같은 유전자원…….(물질이전협정에 기술된 바와 같은 유전자원, 그 파생물(들) 또는 무형요소(들)에 대한 설명 삽입)을 수집할 수 있도록……..님(신청자의 성명, 연락주소 등)에게 부여됩니다.

이 접근허가는 본 규정 및 허가 부여와 관련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따라 발부되며, 허가보유자가 해당 계약 및 발부 조건, 규정에 포함된 조건을 위반할 경우 중단, 취소, 철회될 수 있습니다.

이 접근허가의 보유자 ……님(신청자 성명)과 그 대리인 및 양도인은 이 허가의 조건을 준수하고, 케냐 및 이 허가의 부여와 관련된 기타 당사자들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를 국가환경관리국에 신속하게 보고하는 데 동의합니다.

서명:……. 날짜:……
……
국장
국가환경관리국

2006년 10월 23일

키부타 키봐나(Kivutha Kibwana)
환경천연자원부 장관

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